

대구지방법원 2020. 5. 15 선고 2019가단13193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 리 인 법 무법 인 대 경 종합법 른사무소

담당변호사 최석완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4. 24

판결 선고 2020. 5. 1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로부터 49,573,7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각 1'3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각 이행하고,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

원고는 대구 북구 C 일원(이하 '이 사건 사업부지'라 한다)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중 95%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.

사업부지 내의 토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지분을 소유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협의를 응하지 아니하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가상당액인 매매대금 49,573,7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3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,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,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(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"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"에 한정된다.

원고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 효인

별지